규정입안서 부서명 대외협력처 입안일자 2012.01.03 규정명 국제교류 운영에 관한 규정 예산조치 관련부서 교무처 승인검토 □부분 □법인승인 □법인보고 □기타()

(제·개정사유 및 주요골자)

외국인 명예교수 내용을 "국제교류 운영에 관한 규정"에 추가하여 규정상에 명시하고자 합니다.

제3절 외국인 교환교수의 초빙 및 관리

○ 외국인 교환교수 **외국인 명예·교환교수**

부 칙

①(시행일) 이 규정은 2012년 1월 3일 부터 시행한다.

붙임: 1. 신구조문대비표 1부.

2. 변경후 규정전문 1부.

경영기획실장 귀하

제1조 - 제21조 생략

제3절 외국인 교환교수의 초빙 및 관리

혅

제22조(외국인 <u>교환교수</u> 초빙계획) ①외국인 <u>교환교수</u>를 초빙하고자 하는 부서는 최소한 6개월 전에 소정의 신청서를 교무처에 제출하여야 하며, 위원회는 이를 매학기 초에 자문하고 익년도 같은 학기의 외국인 <u>교</u>환교수 초빙계획에 대해 총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.

②외국인 <u>교환교수</u> 초빙계획이 확정된 경우 해당 부서는 최소한 6개월 전에 <u>교환교수의 이력서, 체류조건 등 체류계획서를 교무처에 제출하여야 한다.</u>

제23조(외국인 <u>교환교수</u> 관리) ①외국인 <u>교</u> <u>환교수</u>가 우리 대학에 체류하는 기간의 관 리는 그 교수가 강의 또는 연구를 수행하는 부서에서 담당한다.

②해당부서에서는 외국인 <u>교환교수</u>의 책임 교수(Academic Counterpart)를 정하여야 한 다.

제23조 - 제36조 생략

부칙 생략

< 신 설 >

개 정(안)

제1조 - 제21조 좌동

제3절 **외국인 명예·교환교수**의 초빙 및 관 리

제22조(외국인 **명예·교환교수** 초빙계획) ① 외국인 **명예·교환교수**를 초빙하고자 하는 부서는 최소한 6개월 전에 소정의 신청서를 교무처에 제출하여야 하며, 위원회는 이를 매학기 초에 자문하고 익년도 같은 학기의 외국인 **명예·교환교수** 초빙계획에 대해 총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.

②외국인 **명예·교환교수** 초빙계획이 확정된 경우 해당 부서는 최소한 6개월 전에 **명** 예·교환교수의 이력서, 체류조건 등 체류계획서를 교무처에 제출하여야 한다.

제23조(외국인 **명예·교환교수** 관리) ①외국인 **명예·교환교수**가 우리 대학에 체류하는 기간의 관리는 그 교수가 강의 또는 연구를 수행하는 부서에서 담당한다.

②해당부서에서는 외국인 <u>명예·교환교수</u>의 책임교수(Academic Counterpart)를 정하여야 한다.

제23조 - 제36조 좌동

부칙 좌동

부 칙

①(시행일) 이 규정은 2012년 1월 3일 부 터 시행한다.

국제교류 운영에 관한 규정

2006. 11. 01. 최초제정 2009. 03. 01. 부분개정 2012. 01. 03 부분개정

제1장 총칙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대전보건대학(이하 "본 대학"이라 한다)의 국제화를 도모하고 해외 협약기관과의 국제교류 활성화를 위해 설치된 국제교류팀(이하 "팀"이라 한다)의 조직과 국제교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장 국제교류팀

제2조(기능) 국제교류 관련 제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국제교류팀을 두며, 그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- 1. 국제교류에 관한 기본정책 및 세부계획의 수립
- 2. 외국대학, 또는 이에 준하는 기관과의 상호협력 및 국제교류 협약체결
- 3. 국제홍보, 학술정보의 자료수집 및 교환
- 4. 기타 국제교류 관련 주요 사항

제3조(조직구성) 국제교류팀은 팀장 및 위원으로 구성하며, 다음과 같이 임명, 위촉 한다.

- 1. 팀장은 본교에 재직 중인 교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한다.
- 2. 위원은 본교에 재직 중인 전임강사 이상의 교원 또는 직원 중에서 부서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위촉한다.
- 3. 팀에는 약간 명의 직원을 둘 수 있다. 단, 겸직할 수 있다.

제4조(재정확보 및 관리) 국제교류팀은 매학기 초에 당해 각 부서의 해외교류사업 및 교직원, 학생의 장·단기해외(어학)연수, 유학생 유치에 대한 계획서 등을 제출받아 익년도의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
제3장 국제교류 위원회

제5조(기능) ①국제교류에 관련되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제교류위원회(이하 "위원회"라 한다)를 둔다.

- ②국제교류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- 1. 국제교류에 관한 기본정책 수립 및 기획에 관한 사항
- 2. 외국대학 또는 이에 준하는 기관과의 교류 및 국제교류 협약체결에 관한 사항
- 3. 기타 국제교류 관련 주요 사항

제6조(조직구성) 위원회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.

- 1. 위원장은 본 대학 대외협력처장을 당연직으로 하며, 위원은 10인 내외로 위촉한다.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, 연임할 수 있다.
- 2. 위원회의 부위원장은 국제교류팀장을 당연직으로 한다.
- 3. 위원은 본 대학에 재직 중인 전임강사 이상의 교원 및 직원 중에서 위원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위촉한다.

제7조(회의)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.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 과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 단, 가부 동수일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권을 갖는다.

제4장 국제교류 협약

제8조(정의) 이 규정 내에서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

- 1. "국제교류협약"(이하 "협약"이라 한다)이라 함은 본교가 외국대학 및 이에 준하는 기관과 상호 호혜정신에 따라 협약을 체결하는 것을 말한다.
- 2. "외국인 교환교수·교환직원·교환학생"이라 함은 우리 대학과 국제기관과의 협약에 따라 우리 대학에 파견된 국제기관의 교수, 직원, 학생을 말하며, 대한민국 국적을 소지하고 있지 아니한 자로서 외국국적의 재외동포를 포함한다.
- 3. "교류교수, 교류직원, 교류학생"이라 함은 우리 대학과 국제기관과의 협약에 따라 상호간에 파견되는 교수, 직원, 학생을 말한다.

제9조(협약체결 대상기관) 협약을 체결할 수 있는 외국의 교류대상기관의 선정기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국제기관으로 한다.

- 1. 어학연수, 공동학위, 인턴십 및 해외취업 등의 학생교류를 위해 협력할 수 있는 외국대학 및 기관단체
- 2. 해외연수, 교환교수 파견 등의 교직원 교류에 협력할 수 있는 외국의 대학 및 기관 단체
- 3. 학문의 질적 수준 향상에 현저하게 기여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외국의 대학, 또는 이에 준하는 기관
- 4. 한국학 관련 강좌를 개설하여 활발하게 연구를 전개하고 있는 국외의 대학 및 연구기관
- 5. 국제기구 및 단체
- 6. 기타 본교의 장기적 발전을 위하여 정책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외국의 대학, 또는 이에 준하는 기관

제10조(협약체결 절차) ①제9조에 준하는 기관과 협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에는 협약 추진계획서를 국제교류팀에 제출하여야 하며, 국제교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추진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.

- ②국제교류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한 때에는, 당해부서에서 관계부서의 협조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받아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.
- ③협약체결은 당해부서의 장이 국제교류팀장과 협의 후, 이를 문서로 작성하여 쌍방의

대표가 서명함으로써 성립된다. 다만, 서명방식은 사정에 따라 통신수단의 이용 등 기타 방식에 의하여 서명할 수 있다.

제11조(체결권자) ①협약체결은 총장이 행한다. 다만, 부득이한 경우, 총장의 위임을 받은 자가 협약체결을 대행할 수 있다.

②동일한 기관을 대상으로 2개 이상의 부서에서 동시에 협약을 체결하는 경우, 국제교 류팀 주관 하에 총장명의로 체결한다.

제12조(보고 및 문서이관) 제11조 1항과 관련, 위임을 받아 협약을 체결한 부서의 장은 대외협력처 국제교류팀에 통지하여야 하며, 협약문 등의 교류에 관련된 서류는 그 원본을 대외협력처 국제교류팀에 이관하여야 한다.

제5장 교직원의 교류

제1절 교류 원칙

제13조(교류기간) ①협약에 의한 교수 및 직원의 교류기간은 1년 이내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. 단, 양 기관의 협의에 의해 교류기간은 연장할 수 있다.

②교류협력을 위한 상호방문 및 해외연수의 경우에는 출장기간과 같다.

제14조(보수) 교류교수 및 직원의 보수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파견하는 대학에서 전액지급하며, 초청대학에서는 보수를 별도로 지급하지 아니한다. 다만, 강의를 담당하는 경우에는 초청대학의 관련규정에 따른다.

제15조(여비) 교류교수 및 직원의 왕복여비는 파견하는 기관이 부담(우리 대학 및 국제 기관: 이하 "파견기관"이라 한다) 또는 본인이 부담한다.

제16조(숙소제공) ①협약에 따라 초빙된 교류 교수 및 직원에게는 숙소를 제공할 수 있다.

②숙소를 제공하는 경우 시설사용료, 전기·수도·가스·전화료 등 공공요금과 관리비는 본인이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

제17조(절차준용) ①협약이 체결되어 있지 아니한 국제기관과의 교수 및 직원 교류의 경우에는 이 규정의 절차를 따른다.

②외부기관의 재정지원에 따라 시행되는 교수 및 교직원 교류의 경우에도 이 규정에 따른다.

③외국인 교환교수와의 공동연구과제 선정, 공동연구에 대한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은 연구의 성격에 따라 개별적으로 정한다.

제2절 파견교수의 선발 및 관리

제18조(파견계획) 국제교류팀은 매학기 초에 당해부서의 교환교수 교류계획을 제출받아 익년도의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
제19조(교환교수의 선발) ①국제기관과의 합의에 의하여 파견분야가 지정된 경우에는

- 그 분야 소속의 부서장이 대상자를 선발하여 파견 6개월 전까지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.
- ②파견분야가 지정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부서장이 파견 8개월 전에 교환교수 희망자를 공개 모집하고 대상자를 선발하여 파견 6개월 전까지 위원회에 통보한다.
- 제20조(교환교수 이외의 해외파견) 다음 각 호와 같이 교환교수 이외의 사유에 의해 교수가 해외에 파견되는 경우에도 본 규정에 따른다.
 - 1. 교육과학기술부 등 국가기관의 지원에 의한 경우
 - 2. 외부기관의 재정지원에 의한 경우
 - 3. 총장의 출장명령에 의한 경우
 - 4. 교원이 개인적으로 국제기관으로부터 초청받은 경우
- 제21조(귀국보고) ①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환교수로 선발된 자는 국제기관에서 교류목적에 부합되는 연구과제를 수행하여야 하며, 귀국 후 1년 이내에 연구결과를 발표하고 발표한 논문을 첨부하여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.
- ②제20조의 규정에 의한 방문의 경우에는 귀국 후 1주일 이내에 방문결과와 보고서를 해당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.

제3절 외국인 명예·교환교수의 초빙 및 관리

- 제22조(외국인 명예·교환교수 초빙계획) ①외국인 명예·교환교수를 초빙하고자 하는 부서는 최소한 6개월 전에 소정의 신청서를 교무처에 제출하여야 하며, 위원회는 이를 매학기 초에 자문하고 익년도 같은 학기의 외국인 명예·교환교수 초빙계획에 대해 총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.
- ②외국인 명예·교환교수 초빙계획이 확정된 경우 해당 부서는 최소한 6개월 전에 명예·교환교수의 이력서, 체류조건 등 체류계획서를 교무처에 제출하여야 한다.
- 제23조(외국인 명예·교환교수 관리) ①외국인 명예·교환교수가 우리 대학에 체류하는 기간의 관리는 그 교수가 강의 또는 연구를 수행하는 부서에서 담당한다.
- ②해당부서에서는 외국인 명예·교환교수의 책임교수(Academic Counterpart)를 정하여야 한다.

제6장 학생 교류

제24조(자격) 본 대학 학칙 및 관련 규정에 의거한다.

- 제25조(신청절차) 외국대학에 인턴십 등 교류를 희망하는 학생은 소정의 구비서류를 갖춘 후, 소속학과 학과장의 승인을 받아 국제교류팀에 제출하여야 하며, 절차에 관한 세부사항은 그때마다 따로 정한다.
- 제26조(선발절차) 해당 학과장의 추천에 의하여 국제교류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발한다.
- 제27조(의무) 외국대학에서 수학하는 기간은 본교에 재학한 것으로 인정하며, 그 기간

- 은 휴학할 수 없다.
- 제28조(등록금 및 경비) ①매학기 등록금은 본교에 납부하여야 한다.
- ②유학에 필요한 제 경비는 본인이 부담함을 원칙으로 한다.
- ③별도의 재정지원을 받는 경우는 별도의 절차에 따른다.
- 제29조(교과과정 이수) 외국대학에서 이수한 교과목을 본교의 교육과정에 따라 인정받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과목을 이수하여야 한다.
 - 1. 본인의 전공 및 부전공 분야 교과목의 이수를 원칙으로 한다.
 - 2. 과목이수에 관한 사항은 수학계획서를 첨부하여 소속 학과장의 승인을 받아, 교무처에 제출하여 확인을 받아야 한다.
- 제30조(출국허가) 출국허가는 국제교류팀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허가한다.
- 제31조(귀국보고) 수학허가 기간이 끝나면 지체 없이 귀국하여야 하며, 귀국 후 7일 이 내에 소속 학과장에게 소정의 귀국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, 소속 학과장은 이를 국제 교류팀에 제출하여야 한다.
- 제32조(학점인정 건의서) ①외국대학에서 발행한 성적증명서나 과정이수 확인서(수료 증)를 귀국 후, 소속 학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- ②소속 학과장은 학점 인정 건의서를 작성하여 이를 국제교류팀에 제출하여야 한다.
- ③국제교류팀은 소속학과에서 제출한 학점 인정 건의서를 검토한 후 교무처에 송부하여 야 한다.
- 제33조(학점의 인정) 해외 국제교류 협약대학에서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생에 대하여 본 대학 학칙 및 관련 규정에 의거 인정한다.
- 제34조(학생지도 및 관리) ①교류대학과 협의하여 본 대학의 학칙, 또는 교류대학의 학칙에 의거 처리한다.
- ②외국인 교환학생의 관리는 교무처에서 담당한다.
- ③국제교류팀에서는 교환학생 희망자에게 학생교류에 관한 안내, 상담 및 자료를 제공한다.

제7장 보칙

- 제35조(준용규정) 이 규정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본 대학의 학칙 및 관련 규정에 따른다.
- 제36조(교류직원) 교환직원 및 외국인 교환직원에 대해서도 이 규정에 따른다.

부 칙

- ①(시행일) 이 규정은 2006년 11월 1일로부터 시행한다.
- ②(경과조치) 이 규정의 시행 이전에 체결된 협약은 이 규정에 의한 것으로 보며, 협약 원본은 대외협력처 국제교류팀에 이관하여야 한다.
- ③(폐지되는 규정) 이 규정의 시행과 동시에 종전 "국내외 대학과의 자매결연에 대한

규정"은 폐지한다.

부 칙

①(시행일) 이 규정은 2009년 3월 1일 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①(시행일) 이 규정은 2012년 1월 3일 부터 시행한다.